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3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안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181조제3항)	3
2.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 근거 마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6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 확대 (안 제68조제1항)	11
※ 참고자료	16
1.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16
2. 디자인 이의신청 관련 통계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판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6.
3. 회부연월일 : 2024. 10.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간소화

(안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181조제3항)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181조제3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략)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u>	2. <u>디자인의 설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u>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u>제37조제3항</u> ----- ----- -----.

현행법 제37조제2항1)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은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창작내용의 요점’은 출원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²⁾ 이는 도면 및 디자인 설명과 함께 해당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별한 의미 없이 관용적으로 기재되고 있고,³⁾ 본래 공지된 디자인 대비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 등을 기재할 경우 오히려 심판·소송에서 출원인에

1) 「디자인보호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적는다.
2. 가능한 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建造物)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는다.
4. 문자 수는 가능하면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작성 예문]

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예문

1) 입체디자인인 경우

(예문1) 이 냉장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실내 주방가구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간결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정면 왼쪽에 표현된 홈 바(home bar)의 형상과 단순한 손잡이의 형상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이하 생략)

3) (예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형광펜볼펜’인 경우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본원 디자인은 형광펜볼펜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으로 기재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⁴⁾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오류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보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현행법 제181조제3항⁵⁾에 따라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 디자인의 설명’ 외에 ‘디자인 창작의 요점’을 기재하도록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디자인출원서에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가 형식화되고 있는 점,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하지 않는 점, ‘창작내용의 요점’을 구체화할 경우 오히려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디자인출원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⁶⁾할 수 있으며, 출원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에 대한 유사 여부를 다룰 때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 내용이 디자인의 내용을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예시)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에 ‘이 디자인은 A의 모티브를 추상화한 것이다’라고 적었을 때, 상대방에서 ‘자신의 디자인은 A의 모티브가 아니므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다’라는 주장 가능

5)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창작내용의 요점에 오류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함.

2.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결정 근거 마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7) 각 호(신규성 위반) 및 제46조제1항·제2항8)(선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u>

7)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8)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⑥ ----- ----- 제5항까지----- ----- ----- ----- -----.
--	--

현행법상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구분되는데,⁹⁾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디자인의 성립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부등록사유 등 디자인등록요건의 일부¹⁰⁾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일부 디자인 물품¹¹⁾에 대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¹²⁾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규정(제62조제2항 및 제4항¹³⁾)하면서 디자인심사등록과 달리 신규

9)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①디자인의 성립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②공업상 이용가능성, ③창작성 중 일부(주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④부등록사유(공서양속, 기능성 등)에 대해서만 심사

11) 1류(식품), 2류(의류), 3류(신변용품), 5류(섬유제품), 9류(포장용기), 11류(주얼리), 19류(문구류)

12)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함께 1998년부터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해 등록받을 수 있는 무심사등록제를 도입하였고, 2014년 그 명칭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로 변경하였음.

13)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성 위반 및 선출원 위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3] 디자인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의 제도적 특징 비교

구 분			심사출원제도	일부심사출원제도
심사범위	방 식 심 사		출원인 적격 등	심사출원과 동일
	실체심사	공 업 상 이용가능성	성립요건, 도면방식 등	심사출원과 동일
		신 규 성	선행디자인 검색, 유사여부판단	X
	위사	창 작 성	공지디자인 결합, 주지형상	주지형상·주지디자인과의 창작성 심사
		부등록사유	공익표장 유사, 선량풍속 위배, 타인업무 혼동, 물품 필수기능 등	심사출원과 동일
장 점			권리획득의 신뢰성	권리획득의 신속성
단 점			권리획득에 장시간 소요	부실권리 형성의 위험성
보 완 제 도			우선심사	이의신청
대 상 물품류 (전체 31개류)			24개류 (1·2·3·5·9·11·19류 제외)	1·2·3·5·9·11·19류 (‘20.12.1.시행)
출원건수(‘24년)			34,189건(전체 출원의 66%)	22,306건(전체출원의 39%)
심사처리기간(‘24년)			착수 7.7개월	착수 0.7개월
채 택 국 가			미국, 일본	EU

그런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등록받거나 등록취소·소멸된 디자인권과 동일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받는 등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¹⁴⁾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14) (민원사례) 중국에서 공지된 디자인을 다수의 업체에서 자유실시 → 이 중 한 업체가 진정한 창작자가 아님에도 일부심사 등록 후 경쟁업체에 경고장 발송 → 타업체 판매 중지 → 등록 무효 전까지 독점하여 제품 판매 → 타 업체의 대응 기간 동안 이미 유행이 바뀌어 소송이 무의미

※ 일부심사 악용 관련 민원 건수 8건(’22) → 12건(’23)→ 12건(’24.7)

현행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 위반 또는 선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¹⁵⁾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심사관이 해당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 위반 또는 선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할 경우 등록 무효가 명백한 경우까지 우선 등록을 해야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실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규성 위반 또는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심사 및 선출원 심사가 일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신속성이 일정 부분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인 부실권리 행사 방지를 위해서 개정안에 동

15) 특허청은 ‘명백한 거절이유’란 디자인 등록결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이 그 거절이유로 인하여 디자인등록결정된 출원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함.

- 구체적으로,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선행디자인과 비교시, 공지·공용디자인을 똑같이 제출하여 공지·공용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제33조1항 각 호의 신규성 위반)하거나 선출원 디자인과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제46조제1항·제2항 선출원 위반)되는 정도를 의미함.

의하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따라 신규성·선출원 판단이 추가되는 경우 AI검색을 활용하여 동일 선행디자인(선등록·선출원)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심사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 중 “제4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표현에는 ‘위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다른 조항의 표현¹⁶⁾을 고려하여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선출원 위반’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¹⁷⁾

16)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7) 이를 반영하는 경우 개정안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음.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 확대(안 제68조제1항)

개정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다만, 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u>3개월이 되는 날까지</u> 그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 ----- ----- 3 <u>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u> ----- ----- ----- -----. ----- ----- ----- ----- ----- ----- . 다만, <u>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8조에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있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후적 보완수단으로 공중의 협조하에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의 확보를 도모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음.¹⁸⁾¹⁹⁾

연도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심사 물품류 확대²⁰⁾(2020년 12월) 및 설정등록 건수 증가 등으로 2019년 28건에서 2024년 9월 현재 178건으로 6.4배 이상 증가하였음.²¹⁾

[표 5] 연도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설정등록	9,920	9,729	19,802	17,796	17,603	20,001
이의신청	28	65	83	77	133	258
신청률	0.3	0.5	0.4	0.4	0.8	1.3

* 신청률 = 이의신청건수/디자인 설정등록건수(일부심사/서류철)

* 이의성립률 = 이의인용(거절결정)건수/이의결정건수

자료: 특허청

이처럼 이의신청 제도는 하자 있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후적 보완수단으로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간이 디자인

18)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심사과정에서 등록요건의 일부를 심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있는 등록디자인의 색출을 공중의 협조하에 시도하는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완수단이라 할 수 있음. 본 제도는 1997년 법 개정에서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음.

출처: 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2023.12.,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9) 사후적 보완수단은 이의신청 외에 무효심판 제도(제121조) 등이 있음.

20) 1류(식품), 3류(신변용품), 9류(포장용기), 11류(주얼리)

21) 참고자료 2. 디자인 이의신청 관련 통계

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동 기간이 도래된 후에 이의제기 사유(예를 들면, 하자 있는 디자인권설정등록 사실을 디자인권 침해통지를 받고 인식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다만,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내로 제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표 7] 이의신청 기간 개정내용

이의신청자	현행법	개정안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개월까지	좌동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	”	공고일부터 3개월까지 + 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단, 최대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²²⁾는 실질적인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로서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절차에 의해 조기에 부실권리의 존속을 결정할 필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22) 디자인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내용증명)를 받은 경우, 디자인 침해에 대해 소장을 받은 경우, 온라인플랫폼(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을 뜻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이의신청 기간의 확대로 이의신청 제기의 증가로 인한 관련 업무부담의 증가,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확대기간(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및 기간제한(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적절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허청은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하는 대상이 되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디자인등록 후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반 공중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3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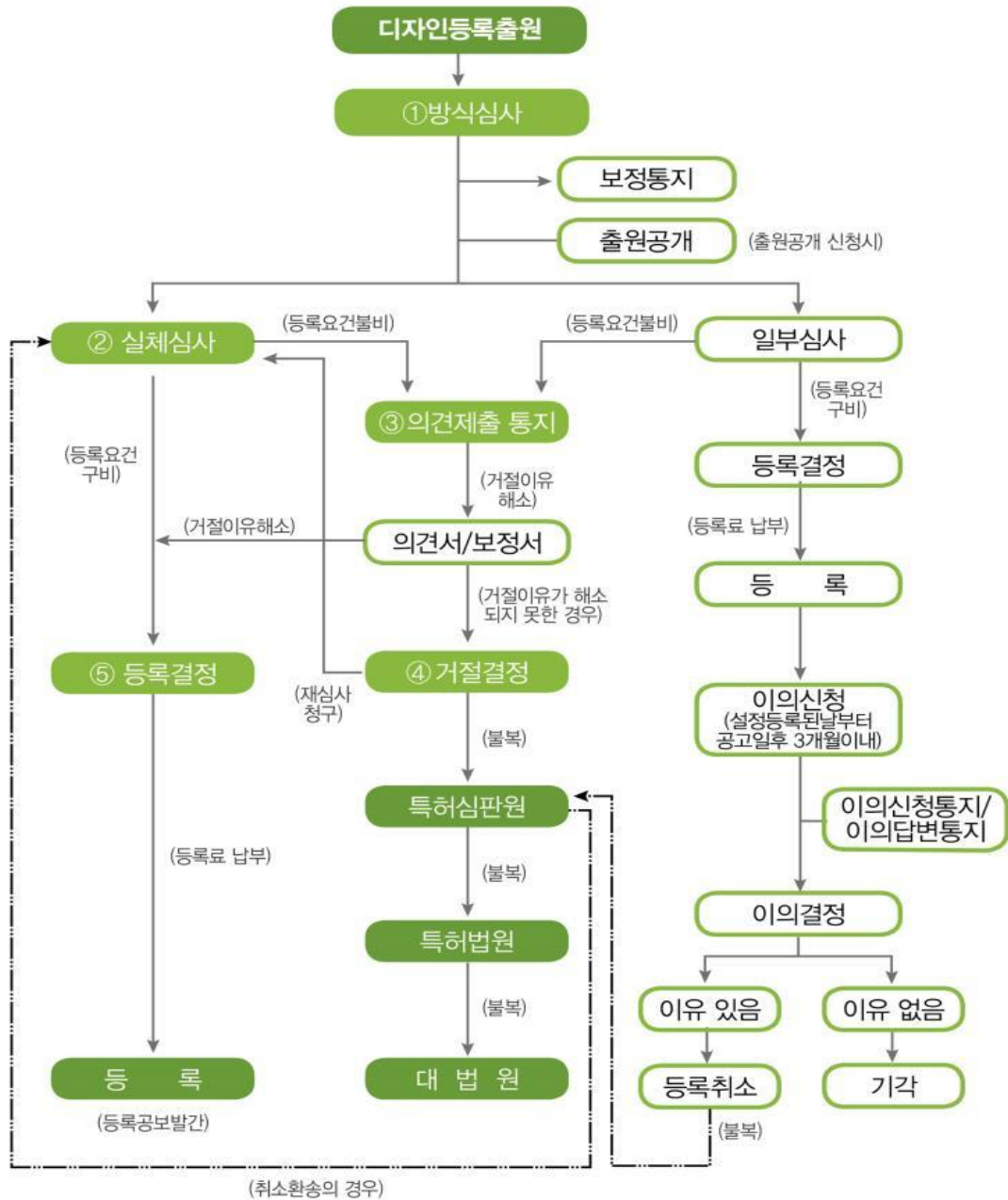
[표 8] 이의신청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구 분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내용	상표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등록 후 디자인 이의신청	등록 후 디자인 이의신청
청구자격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시기	2개월+요청 시 2개월	3개월	2개월

자료: 특허청

문 의 처
02)6788-5468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참고 2

디자인 이의신청 관련 통계

□ 디자인 이의신청 청구률 및 성립률

- 일부심사 물품류 확대('20. 12) 이후 일부심사 비율 증가에 따라 이의신청도 동반 증가 추세이며, 특히 '23년부터 이의신청이 급속하게 증가

<디자인 이의신청 현황 ('12~'24.9.)>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설정등록	18,680	11,687	11,171	9,732	9,746	9,920	9,729	19,802	17,796	17,603	14,917
이의신청	117	45	42	35	34	28	65	83	77	133	178
신청률	0.6	0.4	0.4	0.4	0.4	0.3	0.5	0.4	0.4	0.8	1.2
이의성립	71.8	56.3	45.5	53.9	72.7	67.6	68.8	53.6	71.0	43.3	86.6
	(92/130)	(62/87)	(49/87)	(20/44)	(32/44)	(23/34)	(22/32)	(30/56)	(49/69)	(42/97)	(84/97)

* 디자인 이의신청률 = 이의신청건수/디자인 설정등록건수(일부심사/서류철)

* 이의성립률 = 이의인용(거절결정)건수/이의결정건수

<일부심사 품목 조정 경과>

제도도입('98.3)	1·2·3차 확대	축소*('14.7)	확대('20.12)
5개 한국분류	5개→6개 한국분류('08.1.) 6개→10개 한국분류('10.1.) 10개→18개 한국분류('11.4.)	로카르노 대분류 2류, 5류, 19류	로카르노 대분류 1·2·3·5·9·11·19류
의복(BI), 참구류(CI), 인쇄물(F3), 포장용기(F4), 직물지(MI)	(1차) 화상디자인 등 추가 (2차) 복식품(B2) 등 추가 (3차) 신변용품(B3) 등 추가	2류(의류) 5류(섬유제품) 19류(문구류)	1류(식품), 2류(의류) 3류(신변용품), 5류(섬유제품), 9류(포장용기), 11류(주얼리), 19류(문구류)
전체 출원량의 18%	전체 출원량의 20% → 25% → 35% 증가	전체 출원량의 20%	전체 출원량의 35%

* '14년 로카르노 국제분류 도입 이후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일부심사 품목 선정하며 품목축소가 있었으나, '20년 12월 신속한 권리화에 대한 지속적인 업계의 요구에 따라 3개류→7개류로 대상 확대